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2. 2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2. 16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2. 16(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 안 자 : 내무과장 최 영 옥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. 관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20조 제1항중 "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" 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"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. 관리하여야 한다." 로 개정
-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 할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1항중 "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" 를 "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. 관리 하여야 한다." 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0조 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<u>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0조 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<u>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.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